

인천지방법원 2015. 11. 27 선고 2015나54998 판결 [시효연장을 위한 구상금청구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A

변 론 종결 2015. 11. 6.

판결 선고 2015. 11. 27.

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가소53223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729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2. 22.부터 2003. 10. 23.까지는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성

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,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, 여기에서 '사유가 없어진 후'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다8005 판결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. 2. 19.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,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, 피고는 2015. 6. 16.경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비로소 알고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. 6. 25.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다.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피고는 2002. 1. 12. 11:57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불보사거리에서 무면허 및주취 상태에서 B 차량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을 운전하여 당시 C이 운전 중이던 D 차량을 충격하여 위 C에게

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를 일으켰다.

2)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가 가입되어 있지않았는바,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,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(2003가소360983)를 제기하였다.

3)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3. 10. 16. '피고는 원고에게 729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2. 22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인 2013. 10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, 위 결정은 2003. 11. 7. 적법하게 확정되었다.

4) 원고는 2013. 9. 11. 종전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종전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729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2. 22.부터 2003. 10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위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360983호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, 피고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 구상금 채권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위구상금 채권은 전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 종전의 위 이행권고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)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종전에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같이, 원고에게 729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2. 22.부터 2003. 10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내주, 판사 이동호, 판사 전경욱